

접수번호	M291-26-		검사자	안진현 (서명)
검사항목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제1부. 일반			결과치 "-": 해당없음
설 계 및 제 조	목재 및 관련제품	목재가 사용되는 부분은 배수가 잘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설계할 것	☐ 합 ☐ 불 ☐ -	
		목재가 지면에 닿는 경우, EN 350의 5.2항 내구성 분류 1등급 또는 2등급 목재종류를 사용하거나 이와 내구성 및 내부후성 등이 동등함이 인정된 국내산 목재종류 사용	☐ 합 ☐ 불 ☐ -	
		지면에 닿는 경우, KS F 3028에서 정한 사용환경범주 H3이상의 가압방부처리 목재 사용 방부처리 목재는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캡 또는 다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 합 ☐ 불 ☐ -	
		CCA방부, 크레오소트유 방부 1호 및 2호, CCFZ방부, CCB방부 목재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함수를 기준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적합함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격·품질 시험성적서 등으로 확인한다	☐ 합 ☐ 불 ☐ -	
	금속	금속재질의 부품은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처리 하여야 한다. 금속은 독성산화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면처리를 하여 보호해야함	☐ 합 ☐ 불 ☐ -	
	합성수지	유지 관리하는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료가 딱딱해지고 부서지기 쉬운 성질로 변한다. 제조자는 기구 및 부품 교체주기를 알려주어야 하며, 자외선의 영향으로 골격을 이루는 구성품이 열화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합 ☐ 불 ☐ -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은 KS M ISO 5470-1 (하중값 1 kg, 마모횟수 500 cycle)에 따라 시험했을 때 겔(gel)층이 노출되어서는 안됨.	☐ 합 ☐ 불 ☐ -	
	일반	놀이 도중 발생할 위험성은 사용자 입장에서 분명하고 예견가능할 수 있도록 놀이기구를 설계해야 함. 물이용놀이기구를 제외한 기구의 모든 부분은 물이 고이지 않게 설계해야 함	☐ 합 ☐ 불 ☐ -	
	구조적보전성	구조적 보전성을 아래 제시된 기준 중 한가지에 의거해 평가한다. a) 부록 A와 B에 따라 계산 b) 부록 C에 따른 물리적 시험 c) a)와 b)의 조합 부록B에 따라 계산했을 때, 어떤 한계상황도 B.2에 주어진 하중의 조합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부록C에 따라 시험했을 때 기구에 균열, 손상 또는 과도한 영구변형이 없어야한다.	☐ 합 ☐ 불 ☐ -	
		물이용놀이기구 및 1개의 기동에 의해 안전성이 좌우되는 기구는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의 부식과 부패를 최소화해야하며, 열화를 방지하고 사용중지가 필요한 경우 즉각 조치할 것	☐ 합 ☐ 불 ☐ -	
하 강 에 대 한 보 호	성인의접근	입구지점으로부터 2 000 mm 이상 떨어져 있으며 폐쇄된 터널이나 놀이집과 같은 기구에는 최소 2개의 다른면에 위치한 별개의 개구부가 있어야 함	☐ 합 ☐ 불 ☐ -	
		개구부는 막혀질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되며, 부가적인 수단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개구부의 크기는 500 mm 이상이어야 함	() mm ☐ 합 ☐ 불 ☐ -	
	보호 형태	난간, 보호난간, 울타리를 경사로에 설치할때는 경사로나 계단의 가장 낮은 위치에서부터 설치하여야 함	☐ 합 ☐ 불 ☐ -	
		난간 높이는 발판중심부터 난간 상단까지 600 mm 이상, 850 mm 이하이어야 함.	() mm ☐ 합 ☐ 불 ☐ -	
	보 호 난 간	난간은 '점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횡단면 폭 60 mm 이하)	() mm ☐ 합 ☐ 불 ☐ -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기구에 대해 플랫폼의 높이가 놀이터 표면에서 측정하였을 때 1 000 ~ 2 000 mm 사이라면 보호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 mm ☐ 합 ☐ 불 ☐ -	
		보호난간 상단면 높이는 600 mm 이상 850 mm 이하일 것	☐ 합 ☐ 불 ☐ -	
		각각의 놀이요소에 필수적인 출입구를 제외하고 플랫폼을 완전히 둘러쳐 설치할 것	☐ 합 ☐ 불 ☐ -	
	울 타 리	계단, 경사로, 다리를 제외하고, 보호난간 내 출입구 너비는 500 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mm ☐ 합 ☐ 불 ☐ -	
		보호난간에 있는 출입구의 너비는 계단, 경사로, 다리의 구성요소의 너비보다 넓어선 안됨	☐ 합 ☐ 불 ☐ -	
		출입구	출입구 너비는 500 mm를 초과해서는 안됨 () mm ☐ 합 ☐ 불 ☐ -	
		출입구	보호난간이 있는 울타리의 출입구 너비는 1 200 mm를 초과해서는 안됨 () mm ☐ 합 ☐ 불 ☐ -	
		구조	울타리 사이 출입구 너비가 계단, 경사로, 다리 등의 구성요소의 너비보다 더 넓지 않을것 ☐ 합 ☐ 불 ☐ -	
		구조	발판으로 사용될만한 반 수평이나 혹은 수평에 가까운 가로대가 없을 것 ☐ 합 ☐ 불 ☐ -	
		구조	울타리 상단면에 사용자가 서거나 앉는 행위 또는 그려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도록 설계되지 않을 것 ☐ 합 ☐ 불 ☐ -	
		구조	플랫폼-울타리 사이 또는 울타리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는 탐침봉C가 통과하지 않을 것 ☐ 합 ☐ 불 ☐ -	
		구조	서 있을 수 있는 표면으로부터 측정했을때, 울타리 상단면의 높이는 700 mm 이상일 것 () mm ☐ 합 ☐ 불 ☐ -	

(/)

접수번호		M291-26-		검사자	안전현 (서명)
검사항목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제1부. 일반			결과치 "-": 해당없음
설 계 및 제 조	위 조 조 조	강도요구사항	울타리 및 보호난간은 '4.2.2 구조적보전성'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 합 ☐ 불 ☐ -
		움켜잡음 요구사항	움켜잡을 수 있도록 설계된 모든 지지대의 횡단면은 횡단면 중심을 가로질러 측정했을 때 모든 방향으로 16 mm 이상, 45 mm 이하일 것		() mm ☐ 합 ☐ 불 ☐ -
		집 요구사항	취게 설계된 모든 지지대의 횡단면의 폭은 60 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mm ☐ 합 ☐ 불 ☐ -
		기구의 끝처리	나무로 된 기구는 쪼개지지않는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기타재료(유리섬유 등)로 만든 기구의 끝처리는 쪼개지지 않게끔 처리해야 한다.		☐ 합 ☐ 불 ☐ -
			돌출된 못, 튀어나온 와이어로프 끝 부위,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는 부품 등이 없을 것		☐ 합 ☐ 불 ☐ -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속 내의 볼트의 나사선은 둥근 지붕형태를 한 너트와 같이 영구히 덮여 있을 것		☐ 합 ☐ 불 ☐ -
			8 mm 미만의 삐죽나온 너트 및 볼트의 머리부분은 가시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없을 것		☐ 합 ☐ 불 ☐ -
			모든 용접부위는 부드럽게 연마되어 있을 것		☐ 합 ☐ 불 ☐ -
			사용자가 차지하는 공간 내에 위치하는 8 mm를 초과하고, 주위 25 mm 이내로 감싸지지 않은 모서리, 가장자리, 돌출 부위는 최소반경 3 mm 의 곡선처리가 될 것		☐ 합 ☐ 불 ☐ -
		구동부품	기구의 구동 및 비구동부 사이에는 전단지점과 충돌지점이 없어야 함. 기구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몸 전체의 압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400 mm 이상의 지면간격을 유지할 것		() mm ☐ 합 ☐ 불 ☐ -
	위 조 조 조	일반	정상적인 사용 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영역에서 60° 미만의 각도로 아래방향으로 물리는 부분이 없을 것		☐ 합 ☐ 불 ☐ -
		머 리 / 목	구속된 개구부	600 mm 이상의 높이에 있는 완전 압박임 개구부는 탐침봉D가 통과하지 않는다면 탐침봉C와 탐침봉E는 통과해서는 안됨	☐ 합 ☐ 불 ☐ -
			V형 개구부	600 mm 이상의 높이의 부분적인 압박임 개구부의 시험형판의 B부분 삽입했을 때, 시험형판이 완전히 잠기지 않으면 합격, 완전히 잠기면 아래 기준에 적합해야함.	☐ 합 ☐ 완전히잠김 ☐ -
				수직방향 경우, 시험형판의 A부분 끝(머리형상의 말단 부분)이 개구부의 지저부에 닿을 것	☐ 합 ☐ 불 ☐ -
				수평방향 경우, 형판A부분 끝이 개구부의 지저부에 닿는다면 개구부의 깊이는 형판의 A부분 보다 작을 것. 개구부 깊이가 A부분보다 크다면 시험형판의 어깨 부분까지 삽입될 것.	☐ 합 ☐ 불 ☐ -
			기타 개구부	유연한 구성체(예를 들어 로프 등)는 서로 겹쳐져 머리압박임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 시간이 지날수록 유연한 지지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악의 하중상황도 고려	☐ 합 ☐ 불 ☐ -
				매달려 있는 다리의 움직이는 부분과 단단히 고정된 부분 사이의 개구부는 최악의 하중상황에서 직경 230 mm 이상이어야 한다.	☐ 합 ☐ 불 ☐ -
		옷압박임	미끄럼틀, 회전놀이기구, 소방관지주, 지붕에는 옷 압박임이 없을 것(자유공간)		☐ 합 ☐ 불 ☐ -
		몸 전체 압박임	한쪽이 열린 터널의 경우, 기울기 5°이하, 최소내부치수 750 mm 이상, 길이 2000 mm 이하일 것.		기울기 ()° 최소내부치수 ()mm
			양쪽이 열린 터널의 기울기가 15° 이하라면, 최소내부치수가 400 mm 이상이면 터널길이는 1000 mm 이하일 것. 최소내부치수가 500 mm 이상이면 터널길이 2000 mm 이하일 것. 최소내부치수가 750 mm 이상이면 터널길이에 대한 요구사항은 없음.		터널길이 ()mm
			양쪽이 열린 터널의 기울기가 15°를 초과한다면, 최소내부치수는 750 mm 이상이어야 하며, 오르기위한 제공물이 설치되어야 함		☐ 합 ☐ 불 ☐ -
		발 또는 다리의 압박임	건고/뛰는데 이용되는 수평면에는 사용자의 주 이동방향과 교차하여 측정하였을 때, 사이틈은 30 mm를 초과하지 않을것. 단, 45° 이상의 경사진 표면은 적용하지않음		() mm ☐ 합 ☐ 불 ☐ -
	손가락 압박임	[자유공간 내의 개구부] 또는 [잠재적충격구역 위 1 000 mm 이상의 위치에 있는 개구부]는 8 mm 손가락막대가 통과한다면 25 mm 손가락막대도 통과할 것		☐ 합 ☐ 불 ☐ -	
		튜브나 관의 끝은 손가락 압박임의 위험성이 없도록 막혀져 있어야 하며, 튜브나 관의 끝을 폐쇄시키는 장치는 연장없이 분리할 수 없어야 함		☐ 합 ☐ 불 ☐ -	
		기구를 사용하는 동안 변동되는 틈의 유격은 어느위치에서나 최소 12 mm 이상일 것		☐ 합 ☐ 불 ☐ -	

(/)

접수번호		M291-26-		검사자	안전현 (서명)
검사항목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제1부. 일반			결과치 "-": 해당없음
하강에서의 상해에 대한 보호	공간의 결정	자유하강 높이	자유하강높이는 3 000 mm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mm ☐ 합 ☐ 불 ☐ -	
		자유 공간	플랫폼 혹은 다른 시작점을 통하여 접근이 가능한 소방관 지주는 적어도 인접구조물과 350 m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기립 : 반지름 1 000 mm, 높이 1 800 mm 원통형 공간 앉음 : 반지름 1 000 mm, 높이 1 500 mm 원통형 공간 매달림 : 반지름 500 mm, 매달린 위치에서 위로 300 mm 아래로 1 800 mm 원통형 공간 * 기구에 의해 강제적 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의 자유공간 내 상해에 대한 보호 인접한 자유공간들 사이 또는 자유공간과 하강공간의 사이의 겹침이 없어야 한다. 이 요구사항은 한 집단의 기구의 부품들 사이의 공유공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유공간에는 강제된 움직임을 겪는 동안 사용자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mm ☐ 합 ☐ 불 ☐ -	
			하강 공간	회전놀이기구와 그네 같이 강제적 움직임이 발생하는 경우 하강공간의 겹침이 없을 것 하강공간의 범위는 기구의 올려진 부분으로부터 높레로 1.5 m 이상일 것. 자유하강높이가 1.5 m 이상에서는 하강공간의 범위는 (H*2/3+0.5 m) 이상일 것. 하강공간에는 인접한 부분보다 돌출된 기둥 또는 노출된 기초물과 같이 사용자가 하강하여 상해를 입을만한 장애물이 없을 것 아래 명시된 놀이기구조물의 부품은 하강 공간 내 허용될 수 있다. -자유하강높이가 600 mm 미만인 놀이기구조물의 인접부품들 -사용자를 포함하거나 사용자를 둘러싼 기구의 부분 혹은 사용자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품 -수평에서 측정하였을 때 경사면의 각도가 60° 이상인 놀이기구의 부품	() mm ☐ 합 ☐ 불 ☐ -
				인접 플랫폼	인접플랫폼 사이의 자유하강높이가 1 m를 초과한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플랫폼 상부에 적합한 충격흡수특성이 제공될 것.
		기타 움직임 대비한 보호 처리	기구의 내부 및 외부, 주위의 공간에는 사용자가 예상하지 못하는 장애물(잠재적인 위험성을 갖는 장애물을 포함)이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구조나 배치가 없을 것 ex) 갑작스런 높이나 속도 변화 및 요철, 돌기 등 / 팔 다리 높이에 돌출된 구조물 / 머리카락 높이에 돌출된 구조물 / 서로 다른 종류의 행위가 연속되도록 설계하거나, 방향의 전환만으로 여러 종류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배치 등 각진 모서리나 돌출된 부분이 없거나, 혹은 기능-구조상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 충분히 둥글게 만들거나 접촉면적을 크게 할 것.	☐ 합 ☐ 불 ☐ -	
	설계 및 제조	사다리	발 디딤대 또는 발판의 간격은 머리 윗매임 요구사항에 부합할 것.	☐ 합 ☐ 불 ☐ -	
			발 디딤대 및 발판은 비회전식이어야 하며 동일한 간격을 가질 것 (동일한 간격은 디딤대와 디딤대의 사이 공간에만 해당. 로프사다리 제외)	☐ 합 ☐ 불 ☐ -	
			나무로 된 부속품들은 풀어지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확실하게 연결될 것. 못 또는 나무나사만을 연결 구성형식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합 ☐ 불 ☐ -	
			사다리에 90° 각도로 세운 발 디딤대 또는 발판 중앙으로부터 사다리 후방 최소 90 mm 이내에는 방해받지 않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을 것	() mm ☐ 합 ☐ 불 ☐ -	
			발 디딤대 및 발판은 ± 3° 이내의 범위에서 수평이 되도록 설치할 것	()° ☐ 합 ☐ 불 ☐ -	
"침"에 부합하는 발디딤대를 갖추거나, "움켜잡음"에 부합하는 난간을 갖춘 것. 침 : 횡단면 폭 60 mm 이하 움켜잡음 : 중심을 가로질러 측정했을 때 횡단면 16 mm 이상, 45 mm 이하			☐ 합 ☐ 불 ☐ -		
계단		높이 1 m까지의 플랫폼에 부착된 계단에 대해, 울타리 대신 보호난간이 설치될 경우, 발판의 중심에서 측정하였을 때 보호난간 아래의 빈공간이 600 mm 미만이어야 함 보호난간 또는 울타리는 첫 발판부터 설치되어야 하고, 침 요구사항을 만족할 것 (침 : 횡단면 폭 60 mm 이하)	() mm ☐ 합 ☐ 불 ☐ -		
		계단의 경사도는 일정해야 하며, 계단은 적어도 3개 이상의 층계를 갖추어야 함	☐ 합 ☐ 불 ☐ -		
		발판은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발판 사이의 간격은 균일할 것 발판은 ± 3° 이내의 범위에서 수평이 되도록 설치할 것	☐ 합 ☐ 불 ☐ -		
		물이용놀이기구에 사용되는 계단의 경우 발판 너비의 25 % 이상은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발판의 시작지점에 조치할 것	☐ 합 ☐ 불 ☐ -		
		발판영역의 세로 폭은 140 mm 이상, 발판자체의 세로 폭은 110 mm 이상일 것	()mm ☐ 합 ☐ 불 ☐ -		
		계단의 전체 높이가 지상 2 000 mm 이상인 곳에서의 중간 층계참은 2 000 mm를 초과하지 않은 높이에 설치할 것. 계단선이 이어져 있지 않거나, 최소 90°까지 방향을 바뀌어야 하며, 층계참은 최소 계단만큼 넓어야 하며, 최소 길이가 1 000 mm 이상일 것.	() mm ☐ 합 ☐ 불 ☐ -		
		경사로	경사로는 수평에서 측정했을 때, 경사도가 38°를 초과하지 않을 것. 경사도는 일정할 것.	()° ☐ 합 ☐ 불 ☐ -	
			높이 1 m에 이르는 플랫폼까지 연장된 경사로에 대해, 울타리 대신 보호난간이 설치될 경우, 발판의 중심에서 측정하였을 때 보호난간 아래의 빈공간이 600 mm 미만이어야 함 보호난간 또는 울타리는 첫 발판부터 설치할 것.	() mm ☐ 합 ☐ 불 ☐ -	
경사로는 ± 3° 이내의 범위에서 수평을 유지해야 하며, 미끄러짐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경사로는 발의 조임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포함되어야 함			☐ 합 ☐ 불 ☐ -		
물이용놀이기구에 사용되는 경사로의 경우 300 mm 이내 간격으로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합 ☐ 불 ☐ -		
경사진 놀이요소			쉽게접근할 수 있는 놀이기구에 설치되는 경사진 놀이요소에 대해, 울타리출입구 너비는 500mm 미만이어야 하며, 플랫폼의 자유하강높이는 2 000 mm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합 ☐ 불 ☐ -	
			물이용놀이기구에 사용되는 경사진 놀이요소의 경우 미끄럼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 합 ☐ 불 ☐ -	

(/)

접수번호		M291-26-		검사자	안전현 (서명)	
검사항목		안전인증기준 부속서 2. 제1부. 일반				결과치 "-": 해당없음
연결장치		특별히 설계되지 않았다면, 연결장치는 잠겨있어야 하고, 연장없이 풀어지지 않을 것.				☐ 합 ☐ 불 ☐ -
소비성부품		베어링 처럼 씌우거나, 사용 수명기간중 교체되어야 할 소비성 부품은 교체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교체 시 공식 확인절차가 필요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 합 ☐ 불 ☐ -
		윤활유 누출로 인해 기구를 오염시키지 않을 것, 기구이용에 방해되는 요소가 없을 것.				☐ 합 ☐ 불 ☐ -
설 계 및 제 조	한쪽끝이 고정된 로프	공중에 매달린 길이 1 m ~ 2 m 의 한쪽고정로프와 고정된 부위 사이의 간격은 600 mm 이상, 한쪽고정로프와 옆의 스윙하는 기구 사이의 간격은 900 mm 이상일 것.				() mm () mm ☐ 합 ☐ 불 ☐ -
		한쪽고정로프는 같은 교각의 그네와 연결되어있지 않을 것				☐ 합 ☐ 불 ☐ -
		공중에 매달린 길이 2 m ~ 4 m 이하의 로프에 대하여 한쪽 고정 로프와 기구의 기타부위사이의 간격은 1 m 이상이어야 함.				() mm ☐ 합 ☐ 불 ☐ -
		로프의 지름은 25 mm ~ 45 mm 일 것				() mm ☐ 합 ☐ 불 ☐ -
	양쪽끝에 고정된 로프 (등반로프)	탐침봉C 또는 탐침봉E가 통과하는 고리를 형성하지 않을 것				☐ 합 ☐ 불 ☐ -
		로프 지름은 "움켜잡음"에 부합할 것 (중심을 가로질러 측정했을때 횡단면 16 mm 이상, 45 mm 이하)				☐ 합 ☐ 불 ☐ -
		동일 종의 로프가 인접해서 설치된 경우, 머리 얽매임이 발생하지 않을 것				☐ 합 ☐ 불 ☐ -
	와이어로 프	비회전식이어야 하고 전기도금 또는 부식방지와이어를 사용할 것				☐ 합 ☐ 불 ☐ -
		8 mm 이상 돌출한 로프 철사가 락 끝에 근접한 와이어 로프 클립은 최소공간 바깥쪽에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씌울 것				☐ 합 ☐ 불 ☐ -
		조임쇠의 끝은 덮여져 있어야 하고, 부식방지 물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연장없이 조임쇠를 열 수 없는 구조일 것.				☐ 합 ☐ 불 ☐ -
	덮인 와이 어 로프	덮인 와이어로프의 각 철사가 락은 합성 또는 천연섬유로 만들어진 실로 덮일 것. 덮는 재질은 단가닥섬유와 갈라지는 실을 포함하지 않을 것				☐ 합 ☐ 불 ☐ -
	섬유로프	등반로프, 등반그물, 매달리는로프 등은 삼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과 같이 미끄러지지 않는 것으로 씌어져야 할 것. 단섬유플라스틱 로프 또는 그 밖의 유사재료는 허용되지 않음.				☐ 합 ☐ 불 ☐ -
	체인	놀이기구에 사용하는 체인은 최대 개구부가 12 mm를 초과하거나 8.6 mm 미만인 연결체를 제외하고는 어느방향에서나 최대 8.6 mm의 개구부를 갖출 것.				☐ 합 ☐ 불 ☐ -
	매달려있는 무거운 기둥	매달려 있는 기둥의 중량이 25 kg 이상인 경우 무거운 것으로 간주하며, 무거운 기둥의 지면 간격은 400 mm 이상이어야 한다.				() mm ☐ 합 ☐ 불 ☐ -
매달려 있는 무거운 기둥은 형상변경이 50 mm 이상이 되도록 제작되어야 함				☐ 합 ☐ 불 ☐ -		
움직임의 범위는 100 mm 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지지기둥을 벗어나서는 안됨				☐ 합 ☐ 불 ☐ -		
지지기둥과 매달려있는 무거운 기둥사이의 거리는 230 mm 이상일 것				() mm ☐ 합 ☐ 불 ☐ -		
매달려있는 구동 구조물	매달려 있는 구동 구조물 (Bucket 등)의 이탈 시, 추락방지를 위하여 체인, 와이어로프 등으로 이중안전장치를 하여야 하고, 쉽게 분리할 수 없을 것. (단 이용자의 조작으로 구동하는 것, 자유공간 내에 위치한 것, 소량의 물로 작동되는 것은 제외)				☐ 합 ☐ 불 ☐ -	
버킷에 대한 안 전성	버킷 내부에 작동 하중의 1.5배에 하중을 24시간 동안 가했을 때 균열 혹은 영구적인 변형, 손상이 발견되어서는 안되며 헐거워지지 않을 것.				☐ 합 ☐ 불 ☐ -	
	버킷을 장기적으로 미사용할 경우, 버킷이 작동되지 안도록 조치할 것				☐ 합 ☐ 불 ☐ -	
특이사항						

(/)